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02,000,000	33,060,000
일반회계	998,100,000	29,943,000
특별회계	103,900,000	3,117,000
공기업특별회계	85,100,000	2,553,000
수도사업특별회계	56,000,000	1,68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100,000	873,000
기타특별회계	18,800,000	564,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620,000	198,6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30,000	90,9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80,000	8,400
치수사업특별회계	440,000	13,200
주차장특별회계	8,430,000	252,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288,855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2,500,00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8,052천원
- (3) 내부유보금 12,270,803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